

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09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, 제34조(개정 2002.1.19)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(보건복지부령 제243호, '03.4.1) 시행에 따른 평창군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안 제2조(과태료부과기준) 【별표 1】 개정

1.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상향조정

“100만원”에서 “300만원”으로

- 가.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 판매한 자
- 나.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

2.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규정 신설

- 가.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
- 나.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3.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상향조정

“100만원”에서 “200만원”으로

- 가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.
- 라. 입법예고 : 평창군공고 2004-262호(2004.7.12)
- 마. 신구조문대비표 : 붙 임.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증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【별표 1】 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과 태 료 부 과 기 준

부 과 대 상	부 과 금 액(만원)				비고
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	
1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 (법 제34조제1항제1호)	경 고	100	200	300	
2.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(법 제34조제1항제2호)	경 고	100	200	300	
3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 (법 제34조제2항제1호)	경 고	50	100	200	
4.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(법 제34조제2항제2호)	경 고	50	100	200	
5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(법 제34조제2항제3호)	경 고	50	100	200	

신 · 구 문 대 비 표

부 과 대 상	현 행			개 정			
	부과금액(만원)			부과금액(만원)			
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
1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자 (법 제34조제1항제1호)	30	60	100	경 고	100	200	300
2.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(법 제34조제1항제2호)	30	60	100	경 고	100	200	300
3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 (법 제34조제2항제1호, 신설)	-	-	-	경 고	50	100	200
4.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(법 제34조제2항제2호, 신설)	-	-	-	경 고	50	100	200
5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(법 제34조제2항제3호)	20	50	100	경 고	50	100	200

【관계법령 발췌문】

국민건강증진법

第9條 (禁煙을 위한措置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<개정 1997. 12. 13, 2001. 4. 7, 2002. 1. 19>

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. <신설 2003. 7. 29 법6952>

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·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·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 12. 13, 2002. 1. 19>
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 ·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2. 1. 19>

第28條 (보고 · 檢査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 · 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· 제8조제3항 및 제4항 ·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·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7. 12. 13, 1999. 2. 8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第34條 (過怠料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<개정 1999. 2. 8, 2002. 1. 19>

1.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
2. 제9조제4항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
3.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<신설 2002. 1. 19, 2003. 7. 29>

1.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 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
2.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3.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 의 검사를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자

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

제15조 (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)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 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
2.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
3.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 소. 다만,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 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.

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

제6조 (공중이 이용하는 시설)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· 점유자 또는 관 리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 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(이하 “공중이용시설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9. 10. 28, 2003.4.1>

1.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
2.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
3. 학원의 설립 ·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
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 도에 있는 상점가

5.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6.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
7. 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
8.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, 지역보건법 제7조 ·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· 보건의료원 · 보건지소
9. 사회복지법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
10. 공항 · 여객부두 · 철도역 ·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· 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
11.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탕
12. 음반 ·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
13.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점객업종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
14.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
15.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
16.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

제7조 (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) ①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 · 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1.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 ·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
 2.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, 보건소 · 보건의료원 · 보건지소
 3.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1.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 · 회의장 · 강당 및 로비
 2.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,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
 3.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,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
 4.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
 5.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
 6.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, 휴게실, 강당, 구내식당 및 회의장
 7.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
 8.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, 작업실, 휴게실, 식당 및 사무실

9.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 · 여객터미널 · 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, 국내선항공기, 선실,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, 전철의 지하역사 · 승강장 및 차량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
 10.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
 11.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
 12.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
 13.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
 14.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
 15.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, 복도,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
-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
-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
-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.